

**1 사업개요**

- (사업명) 「청년 디지털 일자리」 채용 인건비 지원
- (사업수행)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광고총연합회(운영기관)
- (지원대상) 원칙적으로 **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**에서 **‘디지털 활용 가능한 직무’**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

- ※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계열회사는 지원이 불가하며, 대기업 계열 300인 미만 기업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※ 5인 이상 판단기준 : 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- ※ 중소기업 :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, 중견기업 :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(중견기업확인서 必)

- 단,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·기업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([별첨2 참조](#))

**<5인 미만 가능 업종유형>**

-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  
⑤ 벤처기업 ⑥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상 청년창업기업(대표자 39세 이하, 창업 7년 이내)

**<디지털 활용 가능한 직무 유형>**

- ① 콘텐츠 기획형 : 홈페이지 기획·관리, 유튜브·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업무  
② 빅데이터 활용형 : 빅데이터 분석, 인공지능(AI), 앱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적합 업무  
③ 기록물 정보화형 : 기업 내 문서,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관련 업무  
④ 기타형 : ①~③유형 이외의 기업별 특화된 디지털활용 업무

- (채용대상) 채용일 기준, 만 15세 ~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

- 단, 군필자는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 (만 39세 限)

- ※ 채용일 기준,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,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

**<채용불가 유형>**

- ① 채용일 기준,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 
- 단,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,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/3 이상 출석한 자는 채용 가능
- ② 채용계획서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직 후 재고용한 경우
- ③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
(다만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)

- ※ 채용공고 시,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, 직무유형, 유형별 채용인원 명시해야 함

○ (근로시간)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

- 기업은 채용계획서에 제출 시, 근로시간 명시

○ (임금지원)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의무

-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(별도로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)

<예시 : 임금지원>

○ 월 임금 총액 : 200만원 이상 → 180만원 + 10만원 지원

200만원 미만 → 지급임금의 90% + 10만원 지원

- 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의무임(20년 최저임금 8,590원×209시간)

※ 주 40시간 근무 시 1,795,310원 / 주 15시간 근무시 678,610원

○ (근로기간)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, 정규직 채용도 가능

- 지원기간 중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,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잔여 지원기간 만큼 지원

※ 정규직 전환의무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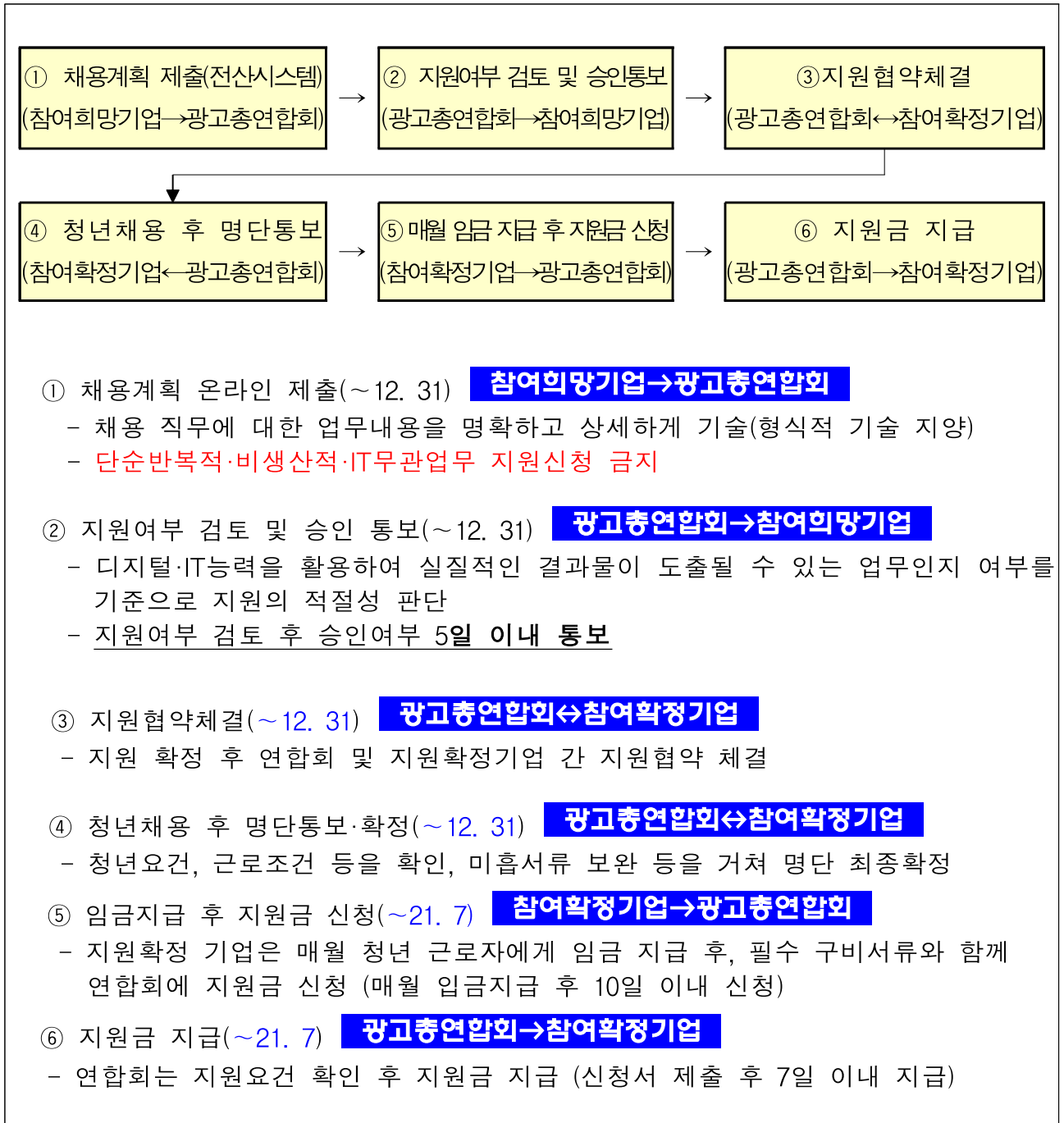
○ (지원인원 한도)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(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)

< 규모별 지원한도 >

구분	지원한도	비고
5인 이상 기업	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	
5인 미만 기업	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%	

○ (참여신청 및 진행절차) 2020. 8~2021. 12. 31(약 5개월)

- 참여희망기업은 워크넷(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)을 통해 신청 (별첨2 참조)



○ (지원금 지급) 한국광고총연합회→참여기업 온라인(e나라도움시스템)을 통해 지원금 지급

○ (담당 및 문의)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략기획팀

- 전화 : 02-2144-0764, 0760, 0750 / 이메일 : [iljari@ad.co.kr](mailto:iljari@ad.co.kr)

**별첨 1**

**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Q&A(참여신청 전 확인필수)**

**Q1. 지원대상 인 ‘우선지원대상기업’과 ‘중견기업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**

A1. ‘우선지원대상기업’ 해당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. ‘중견기업’은 ‘중견기업확인서’를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
**Q2. 5인 미만 기업입니다. 지원가능 업종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**

A2.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지원가능 업종여부는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고용보험 업종코드는 <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→로그인→정보조회→사업장총괄카드조회→고용보험 부분 업종>에서 코드확인이 가능합니다. ‘지식서비스산업’과 ‘문화콘텐츠산업’에 해당하는 기업은 [별첨2]를 참고 바랍니다. 또한 업종유형 확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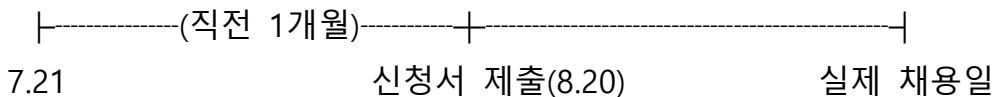
**<5인 미만 가능 업종유형>**

-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(전·후방산업)
- ⑤ 벤처기업 ⑥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상 청년창업기업(대표자 39세 이하, 창업 7년 이내)

**Q3. 5인 이상의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과 중견기업은 모두 지원가능 대상인가요?**

A3. 아닙니다.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(신청일 포함)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. 또한 부동산업, 소비·향락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, 인력공급업, 근로자파견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.

**<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(예시) >**



**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**

- <고용보험 상실사유> 2.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(대분류)
- 23. (중분류)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
    -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위 감축, ②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,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, ④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,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, ⑥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
  - 26. (중분류)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
    - 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

**Q4. 지원기간 중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일부 직원을 감축하려고 합니다.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나요?**

Q4. 지원기간 중 인위적인 감축이 발생한 경우 감원한 인원 수 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합니다. 예를 들어 3명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기존 직원 1명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였을 경우 1명의 지원이 중단되고 2명에 한해 지원이 유지됩니다.

**Q5. 디지털관련 회사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**

A5. ‘디지털 활용 직무’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디지털 관련 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홈페이지 기획·관리, SNS와 유튜브를 관리를 담당하는 홍보담당 인력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
**Q6. 채용한 인력이 지원기간 중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 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**

A6. 예정된 지원기간 내에 채용한 인력이 이직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, 1개월 이상 근무에 한해 일할계산을 통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1개월 미만 근무 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**Q7. 지원신청 기간 내에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원이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?**

A7. 아닙니다. 예를들어 지원신청기간이 6개월이고 채용한 직원이 3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다른 인력을 채용하여 나머지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**Q8.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**

A8. 지원기업은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받게 됩니다. 단,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*Q9. 참여기업 승인 후 ‘채용자 명단통보서’와 함께 ‘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’를 제출하려고 합니다. 해당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?**

A9.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.

(확인방법) 홈택스 누리집 > 민원증명 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**별첨 2**

**5인 미만 가능 업종 (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산업)**

지식서비스 산업

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(10차)
39	환경 정화 및 복원업
46	도매 및 상품중개업
47911	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
581	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
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
5912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612	전기통신업
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63	정보서비스업
70	연구개발업
711	법무관련 서비스업
712	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713	광고업
714	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71531	경영컨설팅업
72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
732	전문디자인업
73902	번역 및 통역서비스업
73903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
73904	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
73909	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74100	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
75320	보안시스템 서비스업
75991	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
75992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(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)
75994	포장 및 충전업
85503	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8566	기술 및 직업훈련학원
861	병원
862	의원
869	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)

□ 문화콘텐츠 산업

코드	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(10차)
33402	영상게임기 제조업
47841	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
58112	만화 출판업
58113	일반 서적 출판업
58211	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12	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5911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2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3	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
59114	방송 프로그램 제작업
5912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
59130	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
59201	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59202	녹음시설 운영업
60221	프로그램 공급업
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
63991	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71310	광고 대행업
71391	옥외 및 전시 광고업
71392	광고매체 판매업
71393	광고물 문안, 도안, 설계 등 작성업
71400	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
73202	제품 디자인업
73203	시각 디자인업
73209	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
75992	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85503	온라인 교육 학원
90110	공연시설 운영업
90191	공연 기획업

**별첨 3**

**세부신청 절차 (워크넷 [www.work.go.kr/youthjob](http://www.work.go.kr/youthjob))**

□ 참여신청서 작성(Step 1)

요약	
1	기업에서 회원 가입 및 로그인 <a href="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">https://www.work.go.kr/youthjob</a> - 워크넷 통합 계정
2	로그인 후 참여신청 바로가기 클릭
3	마이페이지 > 사업참여관리 > 참여신청 관리 탭으로 이동 (사업참여관리(디지털)클릭)
4	사업참여 신청 버튼 클릭 시 참여신청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(중요) 기업에서는 참여신청이 한 번만 신청-승인됨 . 반려시 재신청 가능

□ 참여신청서 작성(Step 2)

요약	
1	담당 운영기관 선택 : 운영기관찾기 클릭
2	운영기관 찾기 팝업 : 주소 또는 운영기관명으로 검색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운영기관 선택



## □ 참여신청서 작성(Step 3)

요약	
1	사업장현황 : 기업구분과 법인등록번호를 입력 - 기업규모가 5인 미만이면 5인 미만 업종 항목 선택
2	관리번호찾기 : 로그인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
3	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: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관리번호 목록 제공 <b>(중요)</b> 피보험자수는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수 예) 신청일 : 2020.08.02 신청직전 월말 기준 : 2020.07.31 <b>(중요)</b> 피보험자수 기준 지원한도 계산됨 <b>(중요)</b> 목록에서 선택한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, 업종, 피보험자수, 기업규모는 화면에 값이 고정되어 수정 불가 <b>(중요)</b> 소비향락업, 부등산업 등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신청 제한
4	담당자 정보 : 사업 담당자의 부서 및 담당자명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팩스번호, 이메일을 입력

## □ 참여신청서 작성(Step 4)

요약	
1	채용계획의 채용유형 :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만 등록하는 항목으로 4개 유형 중 선택 <b>(중요)</b> 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: 유형별로 최대 3개씩 총 12개 채용계획을 등록할 수 있음
2	채용예정인원 : 상단에 입력된 피보험자수 기준의 지원한도에서 채용예정인원 입력 <b>(중요)</b> 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: 피보험자수의 최대 100% (최대 30명)
3	지원한도 초과사유 : 채용예정인원을 지원한도보다 초과하여 입력 할 경우 사유 입력 <b>(중요)</b> -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: 지원한도에서 최대 2배(최대 60명)

# □ 참여신청서 작성(Step 5)

**1 운영계획**

직무수행계획\*

※ 청년 채용 이후 수행할 업무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계획

0 Byte / 4,000 Byte

교육훈련계획\*

※ 교육일일기 000, 교육내용 등 기재

0 Byte / 4,000 Byte

**2 첨부서류 등록**

첨부서류

※ 파일은 최대 5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(총부용량 - 20MB 이하)

※ 등록 가능한 형식은 gif, jpg, jpeg, bmp, png, ppt, pdf, doc, docx, hwp, xls, xlsx, sdd, txt, zip, rar 파일입니다.

**3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**

지원제외 기업(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)\*

① 사업 참여 신청 이전 열람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(5인 미만인 경우, 고용보험 등 예외 대상으로서 1인 이상인 경우 제외) (일정함)

예
  아니오

②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인, 졸업예정자는 가능

확인

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실 시정지침의 지원제외 사유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의향 추가접수-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\*

예
  아니오

**4**

요약	
1	<p><b>운영 계획</b> : 직무수행계획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성과장출계획,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교육훈련계획을 각각 필수 입력</p>
2	<p><b>첨부서류 등록</b> : 참여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인미만 예외기업인증서류 (해당시), 중견기업확인서 (해당시)</li> <li>- 최대 5개까지 등록가능하고 용량은 20MB 이하</li> </ul>
3	<p><b>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</b> : 지원제외 기업에 대한 예/아니오 체크 및 지원제외 청년에 대한 확인사항을 체크</p>
4	<p><b>임시저장 또는 참여신청 처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영기관에서 참여신청서를 '접수'하기 전이면 '신청취소', '삭제' 가능</li> <li>- 운영기관에서 보완 요청시, 보완(신청) 가능</li> <li>- 운영기관에서 접수한 이후에는 수정, 삭제 불가</li> </ul> <p><b>(중요)</b> 입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신청 제한</p>

- 10 -



# 사업주 확인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##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

지원제외 기업(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)	
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(단, 벤처기업,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1인 이상인 경우 '아니오'에 체크)	[ ] 예 [ ] 아니오
② 소비·향락업, 부동산업,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	[ ] 예 [ ] 아니오
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사지방공단, 학교	[ ] 예 [ ] 아니오
④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	[ ] 예 [ ] 아니오
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	[ ] 예 [ ] 아니오
⑥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)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	[ ] 예 [ ] 아니오
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*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	[ ] 예 [ ] 아니오
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	[ ] 예 [ ] 아니오

지원제외 청년(채용일 기준)	
⇒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.	
① 채용일 현재 청년(만 15세~34세 이하)이 아닌 자 (단,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)	[ ] 확인
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-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, 계약직·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	[ ] 확인
③ 3개월 이상 근로계약, 4대 사회보험 가입,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	[ ] 확인
④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	[ ] 확인
⑤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	[ ] 확인
⑥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 또는 동 사업에 참여중인 자	[ ] 확인
⑥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인 자	[ ] 확인
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(단,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입 가능)	[ ] 확인
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(재)고용한 자	[ ] 확인
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(단,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)	[ ] 확인
⑩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	[ ] 확인

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·추가징수·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[ ] 예 [ ] 아니오  
년 월 일

확인자  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운영기관장 귀하

## 표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협약서

**제1조(목적)** ○○운영기관(이하 “운영기관”이라 한다)과 ○○기업(이하 “참여기업”이라 한다)은 “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”(이하 “디지털일자리사업”라 한다)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
**제2조(지원내용)** ① 참여기업이 지원한도 내에서 협약체결일부터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, 지원금액, 지원제한,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근로조건)**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,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,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참여청년의 직무)**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으로 제출한 IT직무 외 다른 직무에 참여청년을 활용할 수 없으며, 월 1회 수행업무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협조의무)**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(고용센터 포함)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·점검(불시 포함)을 실시할 수 있고,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준수사항)** 참여기업은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자격, 지원금 수급요건, 지원금 신청 및 지급,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)**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,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 또한,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(채용월 포함)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,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②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, 청년의 재직 여부,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, IT직무 근무 여부, 임금지급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

## 채용자 명단 통보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사업장 현황	사업장명		대표자명	
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등록번호	
	기업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	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	
	소재지			
	업종		피보험자수	
담당자 정보	담당부서		담당자명	
	전화번호 (팩스번호)		이메일	
채용인원		명		

채용자 명단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채용일 (년 월 일)	채용종료일 (년 월 일)	전화번호	주 근무시간	월보수액	수행업무	

위와 같이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의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확인자  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운영기관장    귀하

첨부서류	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(청년용) 2. 근로계약서 사본 3.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. (필요시) 병역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
------	---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청년용)

### 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,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,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확인 등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(휴대)전화번호	동의일로부터 5년

### 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-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: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,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,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·반복 참여 확인 등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(휴대)전화번호, 참여기간, 지원금액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: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### 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
-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5년

※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『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
성명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년 월 일

귀하





## 수행업무현황

기 간					
근 무 장 소					
담 당 자 명	(서 명)				
지 원 대 상 자 명 (서 명)	(서 명)	(서 명)	(서 명)	(서 명)	(서 명)

<기업내 사업담당자가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작성 제출>

채용계획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,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수행업무 내용

- 
- 
-